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년 9월 14일(목) 15:00 ~ 17:25

● 회의장소 : 교구청 5층 사목상황실(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 이사(이사 8명, 감사 2명)

대표이사 - 이병호

이사 - 김영수, 김봉술, 경규봉, 양석현, 장상원, 서철승, 정식수

감사 - 오성기, 최종문

● 참석자(이사 6명, 감사 1명)

대표이사 - 이병호

이사 - 김봉술, 경규봉, 양석현, 서철승, 정식수

감사 - 최종문

1. 시작기도 : 모두 일어서서 상임이사의 선창으로 시작기도를 하다.

이병호 의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안건이 많지만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협력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김영수 이사님과 장상원 이사님을 제외하고 모든 이사들이 출석하여 이사회 인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다.

2. 전 회의록 안건 낭독 및 승인

김봉술 상임이사는 전 회의록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전자회의록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는지 묻는다. 의문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승인한다.

3. 의안 및 심의안건

No.	안건	심의결과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 운영규정변경(안) - 남성공동생활가정지원 요청	원안 가결 보류
2)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시스템 난방 공사비 신청	원안 가결
3)	나포길벗공동체 : 정화조 철거비 지원 요청	수정안 가결
4)	작은자매의집 : - 운영규정 개정(안) - 원장·사무국장 기숙사요청	원안 가결 부결
5)	무지개가족 :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 가결

6)	남원시노인복지관 :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 가결
7)	법인산하시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나포 길벗공동체, 무지개가족, 남원시노인복지관, 남원가톨릭재가노인복지 센터, 진안군노인복지관, 전주사랑의집, 선너머지역아동센터, 나현네 집, 고창지역자활센터 등 총10개 기관	원안 가결
8)	기타 사항	

4. 안건 심의 내용

1) 제1호 의안

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변경(안)

이병호 ~~의장~~ : 먼저, 첫 번째 안건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변경(안)입니다.

< 의안 설명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이상준 >

첫 번째 안건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변경(안)」입니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규정 제11장 이용규정에 관한 내용은 군산시의 권고가 있었고, 민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일부 삭제 또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사업 운영규정 제8장 종결에 관한 부분은 「이용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경우」에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조항	현재	변경안
【 운영규정 제11장 이용규정】			
1	제3조 (이용의 제한)	<p>관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해당 장애인은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① 전염성 질환자 ② 정신질환자 ③ 기타 다른 장애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애인</p>	<p>관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장애인은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① 전염성 질환자 (삭제) (삭제)</p> <p>(신설) ②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피해를 끼친자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자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추행, 성폭력, 현금갈취, 절도행위 등) (신설) ③ 이용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④ 기타 복지관 운영에 위해적 요인이라 판단된 경우</p>

【 재활사업 운영규정 제8장 종결】

2	제29조 (중도 종결 대상)	<p>다음의 경우에 중도 종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자가 재 서비스의 요청이 없을 경우 내담자가 자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진행 중인 서비스에 2주 이상 결석할 경우 및 월5회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관장 승인을 득한다). 	<p>다음의 경우에 중도 종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자가 재 서비스의 요청이 없을 경우 내담자가 자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진행 중인 서비스에 2주 이상 결석할 경우 및 월5회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신설) 이용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관장 승인을 득한다).
---	--------------------------	-----------------------------------------------------------------------------------------------------------------------------------------------------------------------------------------------------------------------------------------------	-------------------------------------------------------------------------------------------------------------------------------------------------------------------------------------------------------------------------------------------------------------------------------------

두 번째 안건은 「발달장애인 남성공동생활가정 기반 마련 지원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산시 지역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남성공동생활가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따라서 법인에서 군산 시내권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설명 후 퇴장)

이병호 의장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께서 설명한 두 가지 안건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변경(안)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김봉술 이사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안)은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운영규정 변경(안)에 동의합니다.

정식수 이사 : 김봉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김봉술 이사의 동의와 정식수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이사 : 모두 동의

이병호 의장 : 전체 이사가 동의하였기에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남성 공동생활가정 기반 마련 지원요청

이병호 의장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두 번째 안건입니다. 발달장애인 남성 공동생활가정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김봉술 이사 :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남성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운영시작부터 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2~3년 정도는 자체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인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양석현 이사 : 요즘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사업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정처럼 느끼며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남성이고 성인 공동생활가정이므로 아파트 평수가 비교적 넓게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철승 이사 : 저도 양석현 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최종목적은 지역사회로의 통합이며, 그룹홈은 중간의 집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정식수 이사 : 군산지역에 성인남성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석현 이사 : 많은 분들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인 인지하고, 재정을 좀 더 확보해 나가면서 오늘은 문제제기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시간을 두고 준비해 가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규봉 이사 : 양석현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식수 이사 :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지금까지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4명)

이병호 의장 :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결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제2호 의안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시스템 난방 공사비 신청

이병호 의장 : 다음은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난방 공사비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김봉술 상임이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봉술 이사 :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선정되어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으로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건물 1층에 선너머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건물 내부 냉난방 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통합공사 가능여부에 대해 전주시에 해석을 요청하였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공사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에 1층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과 편리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1층 공사는 어린이들의 쾌적한 환경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선너머지역아동센터가 사용하는 1층의 시스템 냉난방 공사비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경규봉 이사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 직영시설로 공사비를 지원하는게 마땅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서철승 이사 : 경규봉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식수 이사 :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서철승이사의 동의와 정식수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사 전원 동의)

이병호 의장 : 전체 이사의 동의로 선너머지역아동센터 시스템 난방 신청에 대한 건을 승인 합니다. 추후 정확한 견적과 공사비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3호 의안 : 나포길벗공동체 정화조 철거비 지원요청

이병호 의장 : 이번 안건은 나포길벗공동체 정화조 철거비 지원 요청입니다. 나포길벗공동체 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의안 설명 : 나포길벗공동체 사무국장 고한중 >

나포길벗공동체 정화조는 배관이 맞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해 내려 가야할 물이 기계실로 역류를 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건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설비 고장 및 여러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하루 빨리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위해 약55,700,000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급박한 현상황으로 볼 때 빠른 공사시작이 필요하므로 법인의 지원을 요청(1500만원)하는 바입니다.(자료 참조)

이병호 의장 : 나포길벗공동체 오수관로 정비 및 정화조 철거를 통한 오수처리 설치공사비 요청에 관한 의안에 대해 논의 해 주십시오.

김봉술 이사 : 공사 진행이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규봉 이사 : 시설에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되므로 자체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철승 이사 : 경규봉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식수 이사 : 저는 대략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하다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기준에 따라 합당하다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최종문 감사 :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법인에 요청을 하였는데 필요와 기준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석현 이사 : 저는 상황에 따라 법인 지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것

은 지원하고 이번 경우는 자체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김봉술 이사 : 그렇다면 전액지원보다는 50%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식수 이사 : 김봉술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규봉 이사 :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그러면 나포길벗공동체 오수처리 설치공사비 요청금액에 대해 50%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사 전원 동의)

이병호 의장 : 이사님들의 결의에 따라 나포길벗공동체 오수처리 설치공사비는 750만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제4호 의안 : 작은자매의 집 운영규정 개정(안) 및 원장 및 사무국장 기숙사 요청

가. 작은자매의 집 운영규정 개정(안)

이병호 의장 : 작은자매의집 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봉술 이사 : 작은자매의 집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 변경에 관한 부분으로 좀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운영규정 제2장 복무규정 (변경 (안))~~

제 31 조 (출장)

(단위: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운임	버스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식)
새마을	일반석	이코노미	일반.우등	유류비	10,000	60,000	7,000

- ① 본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할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일비는 현지 교통비만 가능하다.
- ③ 육로 120km(왕복) 이내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출장비를 출장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다.
- ⑤ 출장여비 기준은 기준표입니다. 기준표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개인경비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운임이 익산에서 서울까지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비 기준에 있는 새마을호를 타지 않고 KTX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영수증 기안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 익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가 새마을호로 10,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10,000원 미만 나왔을 때에는 영수증 금액만 지급합니다.
- ⑥ 자차이동시 동승하는 직원은 자동차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모든 출장 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며, 미첨부일 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⑧ 택시 탑승 시 카드택시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카드가 없는 택시를 이용했을 때에는 자매의집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첨부한다.

정식수 이사 : 작은자매의 집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경규봉 이사 :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정식수 이사의 동의와 경규봉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이병호 의장 : 그럼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전원 동의)

이병호 의장 : 작은자매의 집 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나. 작은자매의 집 원장·사무국장 기숙사 요청

이병호 의장 : 다음은 원장 및 사무국장(수도자) 기숙사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김봉술 이사 : 작은자매의 집은 장애인들의 생활공간 내 성직자 및 수도자의 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별도의 주거 공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지적에 따라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은자매의 집 시설 부지 내 숙소를 별도로 건립해주거나 인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전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기숙사를 요청한 의안입니다.

이병호 의장 : 이 의안에 대해 이사님들께서는 논의해 주십시오.

서철승 이사 : 작은자매의 집 사제관은 어느 개인의 독지가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원장이 가스비 및 난방비 등을 부담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요.

양석현 이사 : 법인 토지로 되어 있으면 기숙사 비용을 내야 합니다.

김봉술 이사 : 작은자매의 집 원장실은 비좁고 계단이 높아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실 원장실 숙소를 신축하거나 새롭게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양석현 이사 : 사제관이 좁고 불편하므로 대안이 필요하므로 점차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당분간은 현재대로 살고 기숙사비를 부담하는게 좋겠습니다.

김봉술 이사 : 양석현 이사님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후 논의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철승 이사 :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양석현 이사의 의견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 이사 동의)

이병호 의장 : 그럼 작은자매의 집 기숙사 요청 건은 현행대로 거주하면서 기숙사비를 지출하며 생활하고, 추후 재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결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휴장 합(16:25~16:30). 16시 30분부터 다시 회의 시작함.]

5) 제5호 의안 : 무지개가족 운영규정 개정(안)

이병호 의장 : 다음은 무지개가족 운영규정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시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김봉술 이사 : 무지개가족 운영규정은 참고 자료와 같이 타당한 사유로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월안에 동의합니다.

경규봉 이사 :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김봉술 이사의 동의와 경규봉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이사 동의)

이병호 의장 : 무지개가족 운영규정 개정(안)은 월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규정	변경 후(안)	사유
7. 운영위원회 규정	<p>제4조(위원회 구성)</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원의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본원의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p> <p>-본원 거주인 대표 1명 (3년마다 거주인 자치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p>	<p>-무지개가족 운영규정 제5조(위원회의 임기)</p> <p>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13. 거주인 자치회 운영규정	<p>제7조(회장의 직무)</p> <p>② 회장은 당연직으로 인권지킴이단 위원과 시설운영위원이 된다.</p> <p>-인권지킴이단 : 2년마다 거주인 자치회 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 (삽입)</p> <p>-운영위원 : 3년마다 거주인 자치회 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 (삽입)</p>	<p>-인권지킴이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2년마다 거주인 자치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변경</p> <p>-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3년마다 거주자 자치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 된 자로 변경</p>
	<p>제8조(부회장의 직무)</p> <p>① 삭제</p>	<p>-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② 항의2</p> <p>: 시설거주자 대표</p>
14. 기타	<p>2. 직원식대비 납부규정</p> <p>제3조(납부금액)</p> <p>① 직원식대비는 매월 5만원의 실비를 납부한다.</p> <p>② 물가인상률에 따라 필요에 의해 인상할 수 있다.</p> <p>③ 납부방법은 매월 급여지급 시 공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인 1인당 월지급생계비 (248,961 원)에서 피복비 (30,000원)를 제한 금액(218,961원)을 월식비로 계산 $218,961원 \div 90(3식 \times 30일) \times 20$ (월평균 근무일) = 48,658원

6) 제6호 의안 : 남원시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이병호 의장 : 남원시노인복지관 운영규정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시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서철승 이사 : 남원시노인복지관은 지난 8월에 남원시 감사를 받았고, 회계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강사료 및 일비 등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지자체에서 요청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개정(안)을 요청 하였습니다.

정식수 이사 : 서철승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봉술 이사 : 재정합니다.

이병호 의장 : 정식수 이사의 동의와 김봉술 이사의 재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잠시 침묵)

이병호 의장 : 그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 이사 동의)

이병호 의장 : 남원시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은 전체 이사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고 : 남원시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

남원시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 심의 내용(2017.8.31. 신구문 대조표) • 붉은색은 운영위원회 변경 승인

영역	운영규정(구문)	운영규정(신문)	개정사유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제 3 조 (적용범위)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이 외에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준하여 따른다. 제3장 제20조의 승진, 제21조의 승급, 제4장 제24조의 휴직, 제25조의 육아휴직, 제26조의 복직에 관한 규정은 계약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적용범위)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이 외에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준하여 따른다. 제3장 제20조의 승진(삭제), 제21조의 승급, 제4장 제24조의 휴직, 제25조의 육아휴직, 제26조의 복직에 관한 규정은 계약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범위 현실에 맞게 수정 (삭제)
인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 운영)	제 8 조 (인사위원회 운영)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관장1인 2. 위원 : 법인사회서목국장1인, 법인사제1인, 사무국장1인 3. 간사 : 인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한 자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 8 조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및 변경 ②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복지관 관장,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법인관계자 1명, 이용자 대표 1명, 직원 대표 1명,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변경)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관 관장이 된다.(변경) ④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관련자 중에서 인사위원장이 선정한다.(변경)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직원 대표로 위원에 위촉된 자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⑥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번호만 변경)	인사위원회 필수 요건인 자격요건, 임기, 의결요건 수정 (신설, 삭제, 변경)

	<p>제 9 조 (회의 및 소집)</p> <p>① 위원장은 위원의 2/3의 출석으로 소집하고 위원 회의 의장이 된다.</p> <p>②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이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p> <p>③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제 9 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요건) 신설, 삭제, 변경</p> <p>① 회의 소집은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위원회를 당일 소집할 수 있다.(신설)</p> <p>② 항목 (삭제)</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변경)</p> <p>④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변경 및 신설)</p>	
인사규정 제20조 (강사 선발 기준) 제21조 (강사비 지급 기준)		<p>제 20 조 (강사 선발 기준)</p> <p>① 복지관 인사규정에 준하여 강사를 선발하며, 남원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단, 강사선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타지역의 강사를 선발 할 수 있다. (신설)</p> <p>제 21 조 (강사비 지급 기준)</p> <p>① 평생교육 및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비는 시간당 30,000 원으로 책정하며, 2시간 연강일 경우 50,000원으로 책정한다. (단, 관장은 프로그램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강사비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p> <p>② 강의 장소가 원거리일 경우나, 남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에게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p>	강사선발기준 (신설)



	<p>제 10 조 (수당의 지급)</p> <p>① (효도휴가비) 복지관의 직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봉급액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한다.</p> <p>②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p> <p>③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④ 가톨릭 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활절과 성탄절에 관장이 정하는 일정액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다.</p> <p>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p>	<p>③ 외부공모사업의 경우 강사비는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신설)</p> <p>④ 특강 및 외부 교육 관련 강사비는 자체 강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강의 실시 후 강사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한다.(신설)</p> <p>⑤ 프로그램 강사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원천세를 공제 후 강사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한다.(신설)</p> <p>제 10조(수당의 지급) ① ~ ⑤ 항목 (삭제)</p> <p>① 직원의 수당은 봉급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되되,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별표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및 변경)</p> <p>제 11조(직책보조비) 항목 (삭제)</p>	
보수규정 제 10 조 (수당의 지급) 제11조 (직책보조비)			보전복지부 및 복지관 운영 특수성 감안 별도 수당 (삭제, 신설, 변경)

		〈별표 4〉 신설 수당 지급 기준표	
외에 당해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종사자수당,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변경)	설, 추석 전 15일 이내 지급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수당 지침 에 따라 변동 적용
제 11조 (직책보조비) 직책보조비 지급은 기관의 여건에 따라 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① 직책보조비는 법인 전입금에서 지급한다. ② 직책보조비는 별표4에 따른다.	가족 수당	배우자 40,000원 직계존비속 20,000원 (셋째자녀 30,000원) (변경)	매월 지급 *부양가족 중 자녀수 의 제한 없음. *예산 영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후 보건 복지부 당해 연도 가족 수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문건 신설 삽입)
〈별표 4〉 복지관 직책 보조비 기준표	시간외 수당	시간외 수당 (통상임금×1/209× 1.5×월10~40시간)	* 근로기준법 및 통상관례에 의함.
	급식 수당	전직원 40,000원 (신설)	매월 지급
	기타 수당 (특수근무수당)	방화관리 및 위험물취급관리자수당 50,000원(신설)	매월 지급
	직책보조비	관장 300,000원 사무국장 200,000원 과장 150,000원 팀장 100,000원	매월 지급 * 법인전입금에서 지 급 단, 예산이 허용하 는 범위내에서 지급

여비규정 제5조 (여비지급)	② 본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는 출발 전에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여비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산급하고 출장 후 검산한다.	② 본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는 출장 이후 상계처리하여 직원 개인통장에 입금한다.(변경)	여비지급방법 (변경)																																																																																
복지관 이용 및 이용료에 따른 규정 제 8조 (이용 기준)	<p>① 일반인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경우 3,000원의 비용을 받는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기준</th> <th>요금</th> <th>초과사용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회원 식당이용</td> <td>정오(12:00~13:00) 1회</td> <td>1,500원</td> <td></td> <td></td> </tr> <tr> <td>물리치료실</td> <td></td> <td>무료</td> <td></td> <td></td> </tr> <tr> <td>회원 및 일반인 경당</td> <td>오전(08:00~12:00) 1회 오후(12:00~17:00) 1회 야간(18:00~22:00) 1회</td> <td>50,000원</td> <td>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td> <td></td> </tr> <tr> <td>냉·난방 시설</td> <td>1회</td> <td>30,000원</td> <td>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td> <td></td> </tr> <tr> <td>경당 부대 시설</td> <td>1회</td> <td>50,000원</td> <td>마이크, 립프로젝트, 음향, 조명등</td> <td></td> </tr> <tr> <td>식당</td> <td>1회 식사</td> <td>3,000원</td> <td>일반인</td> <td></td> </tr> </tbody> </table>	시설명	기준	요금	초과사용료	비고	회원 식당이용	정오(12:00~13:00) 1회	1,500원			물리치료실		무료			회원 및 일반인 경당	오전(08:00~12:00) 1회 오후(12:00~17:00) 1회 야간(18:00~22:00) 1회	50,000원	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경당 부대 시설	1회	50,000원	마이크, 립프로젝트, 음향, 조명등		식당	1회 식사	3,000원	일반인		<p>① 항목 중복 문건으로 삭제 * 별표 변경, 신설 내용 식사비: 식당이용 - 2,000원으로 변경 대관료: 중강당 - 50,000원(1회), 요가실 - 30,000원(1회)으로 신설 * 대관 기준 “~1회”를 “~1회당”로(변경)</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기준</th> <th>요금</th> <th>초과사용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회원 식당이용</td> <td>정오(12:00~13:00) 1회</td> <td>2,000원</td> <td></td> <td></td> </tr> <tr> <td>물리치료실</td> <td></td> <td>무료</td> <td></td> <td></td> </tr> <tr> <td>회원 및 일반인 경당</td> <td>오전(09:00~12:00) 오후(12:00~17:00) 야간(18:00~22:00)</td> <td>50,000원</td> <td>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td> <td></td> </tr> <tr> <td>냉·난방 시설</td> <td>1회</td> <td>30,000원</td> <td>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td> <td></td> </tr> <tr> <td>경당 부대 시설</td> <td>1회</td> <td>50,000원</td> <td>마이크, 립프로젝트, 음향, 조명등</td> <td></td> </tr> <tr> <td>중강당</td> <td>오전(08:00~13:00) 오후(13:00~18:00)</td> <td>50,000원</td> <td>1회기준 5시간 이내 대관료 내지불포함</td> <td></td> </tr> <tr> <td>요가실</td> <td>오전(08:00~13:00) 오후(13:00~18:00)</td> <td>30,000원</td> <td>1회기준 5시간 이내 대관료 내지불포함</td> <td></td> </tr> <tr> <td>식당</td> <td>1회 식사</td> <td>3,000원</td> <td>일반인</td> <td></td> </tr> </tbody> </table>	시설명	기준	요금	초과사용료	비고	회원 식당이용	정오(12:00~13:00) 1회	2,000원			물리치료실		무료			회원 및 일반인 경당	오전(09:00~12:00) 오후(12:00~17:00) 야간(18:00~22:00)	50,000원	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경당 부대 시설	1회	50,000원	마이크, 립프로젝트, 음향, 조명등		중강당	오전(08:00~13:00) 오후(13:00~18:00)	50,000원	1회기준 5시간 이내 대관료 내지불포함		요가실	오전(08:00~13:00) 오후(13:00~18:00)	30,000원	1회기준 5시간 이내 대관료 내지불포함		식당	1회 식사	3,000원	일반인		식당이용요금 및 대관료 (변경 및 신설)
시설명	기준	요금	초과사용료	비고																																																																															
회원 식당이용	정오(12:00~13:00) 1회	1,500원																																																																																	
물리치료실		무료																																																																																	
회원 및 일반인 경당	오전(08:00~12:00) 1회 오후(12:00~17:00) 1회 야간(18:00~22:00) 1회	50,000원	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경당 부대 시설	1회	50,000원	마이크, 립프로젝트, 음향, 조명등																																																																																
식당	1회 식사	3,000원	일반인																																																																																
시설명	기준	요금	초과사용료	비고																																																																															
회원 식당이용	정오(12:00~13:00) 1회	2,000원																																																																																	
물리치료실		무료																																																																																	
회원 및 일반인 경당	오전(09:00~12:00) 오후(12:00~17:00) 야간(18:00~22:00)	50,000원	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경당 부대 시설	1회	50,000원	마이크, 립프로젝트, 음향, 조명등																																																																																
중강당	오전(08:00~13:00) 오후(13:00~18:00)	50,000원	1회기준 5시간 이내 대관료 내지불포함																																																																																
요가실	오전(08:00~13:00) 오후(13:00~18:00)	30,000원	1회기준 5시간 이내 대관료 내지불포함																																																																																
식당	1회 식사	3,000원	일반인																																																																																

7) 제7호 의안 : 법인산하시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이병호 의장 : 법인산하시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자료를 참조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경규봉 이사 :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봉술 이사 :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이사 동의)

이병호 의장 : 법인 산하시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은 참석 이사들이 모두 이의 없이 동의하여 승인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단위 : 천원)

시설	2017년 추경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 (A-B)		주요 인상(삭감)요인	
			금액	%		
군산 장애인 종합 복지관	합 계	3,231,174	3,174,612	56,562	1.75	
	복지관	1,860,000	1,805,000	-55,000	-2.96	·지원해외연수 법인전입금, 개인부담금 증가 ·외부지원사업 증가
	활동지원사업	1,175,600	1,174,700	900	0.08	·직원해외연수 개인부담금
	정보화 교육센터	23,302	23,302	0	0	
	특별회계	172,272	171,610	662	0.38	
나포길벗공동체	1,522,320	1,493,797	28,523	1.87	·후원금, 전입금, 잡수입 증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증가	
무지개가족	1,487,596	1,559,835	△72,239	-4.86	·입소자부담금증가, 보조금 및 잡수입감소 ·인건비, 사무비, 시설비감소, 사업비증가	
남원시노인복지관	1,547,081	1,449,332	97,748	6.32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금 인상으로 인함	
남원가톨릭 재가노인복지센터	265,909	261,465	4,444	1.67	·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급여 84.3% ·17년 종사자처우개선으로 인건비상승	
진안군노인복지관	1,232,759	1,162,519	70,240	5.70	·보조금 증가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증액	
전주사랑의집	942,048	930,209	11,839	1.26	·후원금 및 전입금 증가 ·사무비, 재산조성비 증액, 사업비 및 예비비 감소	
선너머 지역아동센터	101,951	100,891	1,060	1.04		
나현네집	66,950	63,200	3,750	5.60	·보조금 및 법인전입금 증가 ·사무비 및 사업비 증액	
고창지역자활센터	2,069,583	2,119,583	△50,000	-2.42	·고창군 보조금 내시 변경	

5. 기타 심의 및 보고사항

이병호 의장 :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김봉술이사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술 이사 : 기타 사항 설명함.

1)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재수탁 심사

- 2015. 3. 1.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수탁 운영시작(~2017. 12. 31까지 운영)
- 2017. 9. 8.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재수탁 심사(14시, 진안군청) 참여
근거)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위·수탁 협약서 제4조 ②항에 따라 연장(재협약)

이병호 의장 : 네. 감사합니다.

6. 폐회

이병호 의장 : 오늘 논의사항 이외 다른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신지요? 없으면 폐회 동의 바랍니다.

정식수 이사 : 오늘 이사회의 폐회를 동의합니다.

양석현 이사 : 경규봉 이사의 폐회동의에 재정합니다.

(이사 전체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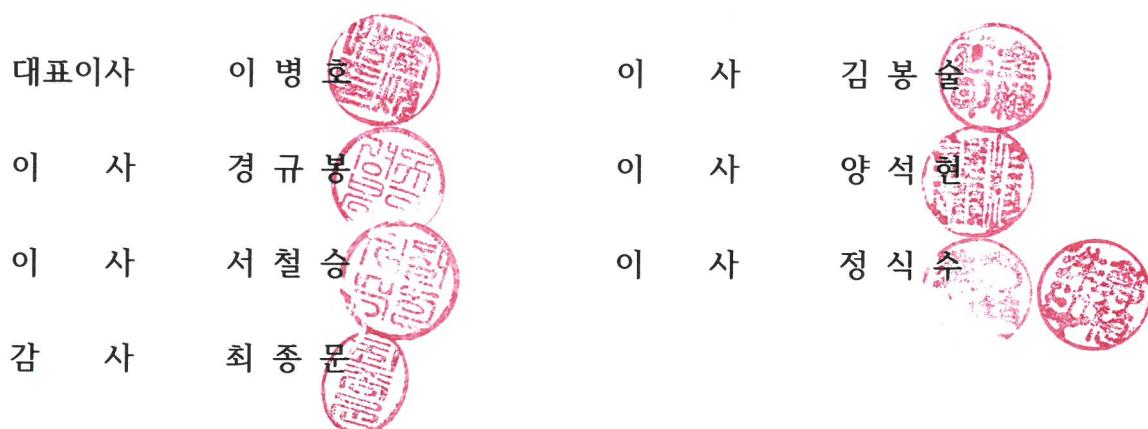
이병호 의장 : 오늘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의안이 모두 심의 종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고, 기도로 마친다.)

마침 시간 : 17시 25분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임원이 서명·날인함.

2017년 9월 14일



사회복지
법
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